

순천대학교 언론사규정

제정 1994. 11. 28.

개정 2011. 1. 26.

개정 2017. 2. 23.

개정 2021. 3. 29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(이하 "학칙"이라 한다) 제13조에 의하여 대학의 면학기풍조성과 언론문화창달을 위해 순천대학교언론사(이하 "언론사"라 한다)를 두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소의 소재지) 언론사는 순천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에 둔다.

제3조(사업) ① 언론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순천대 신문의 발행
2. <삭제 2021. 3. .>
3. 이 대학교내 방송
4. 언론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사업

② 언론사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사장 등) ① 언론사에 사장·부사장 및 주간 각 1인을 둔다.

② 사장은 총장이 되고 언론사를 대표하며 언론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부사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④ 주간은 이 대학교 부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언론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언론사에 다음의 조직을 둔다.

1. 순천대학교신문사(이사 "신문사"라 한다.)

2. <삭제 2021. 3. .>

3. 순천대학교방송국(이하 "방송국"이라 한다.)

② 신문사에 발행인겸 사장 1인, 부사장 1인과 주간 1인을 방송국에 국장 1인, 부국장 1인과 주간 1인을 둔다. <개정 2021. 3. 29.>

③ 제2항의 발행인겸 사장(국장)·부사장(부국장) 및 주간은 제4조제1항의 사장·부사장 및 주간이 겸한다.

제6조(취재 및 편집) ① 언론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취재 및 편집의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여야 한다.

1. 이 대학교내의 시사적 뉴스
2. 학사업무에 관한 사항
3. 교수 및 학생의 연구와 문예활동
4. 교육적 가치가 있는 대회인의 기고
5. 그 밖에 대학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 <개정 2011. 1. 26.>

② 취재 및 편집·보도에 관한 활동은 언론사의 규정이나 학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.

- 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언론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언론사주관이 되면 위원은 이 대학교 조교수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1. 언론사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
 2. 규정의 제정 및 개·폐
 3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언론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<개정 2011. 1. 26.>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편집회의) ① 언론사의 편집업무에 관한 주요계획을 심의하고 언론보도에 관한 여론을 수집·평가·분석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각 조직에 편집회의를 둔다.
- ② 편집회의는 주간·편집국장(편성국장)·학생편집장(실무국장) 및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, 주간은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1. 1. 26.>
- 제9조(논설위원과 자문위원) ① 언론보도에 관한 사실과 주요사항에 대한 논평과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사에 약간명의 논설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논설위원과 자문위원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사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제2장 신문사

제10조(기능) 신문사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순천대 신문의 발행
2. 대학구성원에 관련되는 학술 및 문화사업
3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<개정 2011. 1. 26.>

제11조(하부조직) ① 신문사에 편집국을 두며 편집국장은 전임교원 또는 조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언론사 사장이 임명하고 주간을 보좌하여 신문발행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소속기자를 통할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- ② 편집국장을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학생편집장을 두며 학생편집장은 정기자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③ 편집국에 취재부·사진부·학술부·사회부·문화부를 두며 각 부장은 학생정기자중에서 주간이 임명하고 소속부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각 부별 업무분장은 주간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2조(학생기자) ① 학생기자는 정기자와 수습기자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자는 6개월간의 수습기자 중에서 주간의 추천으로 언론사 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수습기자는 이 대학교 학생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언론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주간이 임명한다.
- ④ 학생기자의 정원은 언론사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3장 <삭제 2021. 3. 29.>

제13조 <삭제 2021. 3. 29.>

제14조 <삭제 2021. 3. 29.>

제15조 <삭제 2021. 3. 29.>

제4장 방송국

제16조(영문표기) 방송국의 영문표기는 SunchonNationalUniversityBroadcastingStation으로 하고 호출부호는 S.U.B라 한다.

제17조(기능) 방송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교직원 및 학생들의 교내외 활동 보도
2. 대학 구성원에 관련되는 문화행사 및 교양물 제작 보도
3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<개정 2011. 1. 26.>

제18조(하부조직) ① 방송국에 편성국을 두며 편성국장은 전임교원 또는 조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언론사 사장이 임명하고 주간을 보좌하여 방송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며 소속기자를 통할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② 편성국장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국장을 두며 실무국장은 정기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③ 편성국에 기획부·제작부·보도부·아나운서부·기술부를 두며 각 부장은 정국원 중에서 주간이 임명하고 소속부의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④ 각 부별 업무분장은 주간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9조(학생국원) ① 학생국원은 명예국원·정국원·수습국원으로 구분한다.

② 명예국원은 2년 이상의 정국원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주간의 추천으로 언론사 사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③ <삭제 2011. 1. 26.>

④ 수습국원은 신입생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언론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주간이 임명한다.

제5장 재 정

제20조(재정) 언론사의 운영재원은 대학회계·보조금·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7. 2. 23.>

제6장 상 별

제21조(포상과 징계) ① 창의적인 언론활동을 통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언론사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②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언론활동을 저해한 사람 또는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1. 26.>

③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, 학사경고 2회 이상인 사람은 그 직을 해임한다. <개정 2011. 1. 26.>

제22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언론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론사 사장이 정한다.

부 칙 <1994. 11. 28.>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순천대학교신문사규정과 순천대학교영자신문사규정 및 순천대학교방송국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부 칙 <2011. 1. 26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2. 23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부터⑤까지 생략

⑥ 순천대학교 언론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(재정) 본문 중 “기성회비”를 “대학회계”로 한다.

⑦부터⑭까지 생략

부 칙 <삭제 2021. 3. 2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